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9

제 출 일 : 2024. 8. 23.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일부 분묘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환·설치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거리제한 규정의 예외사항 추가

- 가족, 종중·문중의 분묘를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1) 협의기간 : 2023. 9. 6. ~ 2023. 9. 12.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1) 예고기간 : 2023. 12. 14. ~ 2024. 1. 3.(20일)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타목나)③에 해당하는 경우
2. 토지나 지형상황으로 시경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시설로 변경할 경우

제6조제1호 본문 중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관 관·과		노인복지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한 혜 정
	팀장 직위·성명	장묘문화팀장 성 진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인 홍 (031-590-28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법률 시행이전에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납골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타목나)③에 해당하는 경우 2. 토지나 지형상황으로 시경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시설로 변경할 경우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 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생 략)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 별표 3-----.
제15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제3호타목나)③에 따라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에 봉안시설 설치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으로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노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3A경기남양071)

1. 노인복지과-25071(2023. 9. 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3A경기남양071)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김윤영	여성아동과장	출장	복지국장	전결 2023. 9. 12. 최재웅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5578 (2023. 9. 12.) 접수 노인복지과-25813 (2023. 9. 12.)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남양071			
정 책 명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노인복지과		
	담당자명	김인홍	전화번호	031-590-284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인복지과)	○ 제·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타목나)③에 따라 허가 가능한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를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노인복지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노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3-61)

노인복지과-25073(2023.9.6.)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서광근

주무관 김주현 감사관 서상근 2023. 9. 11.
협조자

시행 감사관-10473 (2023. 9. 11.) 접수 노인복지과-25649 (2023. 9. 11.)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3-남양주-61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노인복지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복지9급 김인홍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3. 9. 11.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3년 9월 11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노인복지과장 귀하

붙임 4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노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 남양주시 노인복지과-25072(2023. 9. 6.)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봉안시설 거리제한에 대한 예외 대상의 확대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현기 적극행정팀장 남상명 법무담당관 김진배 2023. 9. 6.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209 (2023. 9. 6.) 접수 노인복지과-25103 (2023. 9. 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보고

인쇄 : 김인홍 / 노인복지과 (2024-01-08 10:36:37)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결과보고

1. 노인복지과-34552(2023. 12. 11.)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제명 :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14.(목) ~ 2024.01.03 .(화)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등 입법절차 진행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김인홍	장묘문화팀장	김지웅	과장	한혜정	복지국장	전결 2024. 1. 5. 최재웅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설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시행	노인복지과-422			접수			

우 1217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840 팩스번호 031-590-8899 / dlsghd345@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